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

2024. 3. 1.

제일무궁화유치원

목차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

I. 학교안전계획 개요	1
1. 학교 현황	1
2. 학교 안전 조직	2
3.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4
II. 학교안전 현황	5
1. 전년도 학교계획 추진실적	5
2. 학교안전 현황분석 및 개선방향	9
III. 안전교육 및 예방활동 계획	10
1. 안전한 학교 특색사업	10
2.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계획	11
3. 학생 및 교직원 안전교육 시행계획	18
IV. 학교안전사고 피해회복	19
1. 17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절차	19
2.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배상책임 공제급여 청구절차	20
3. 학교안전사고 시 학생 심리지원	21
참고 1.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22
참고 2. 2021「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25



1 학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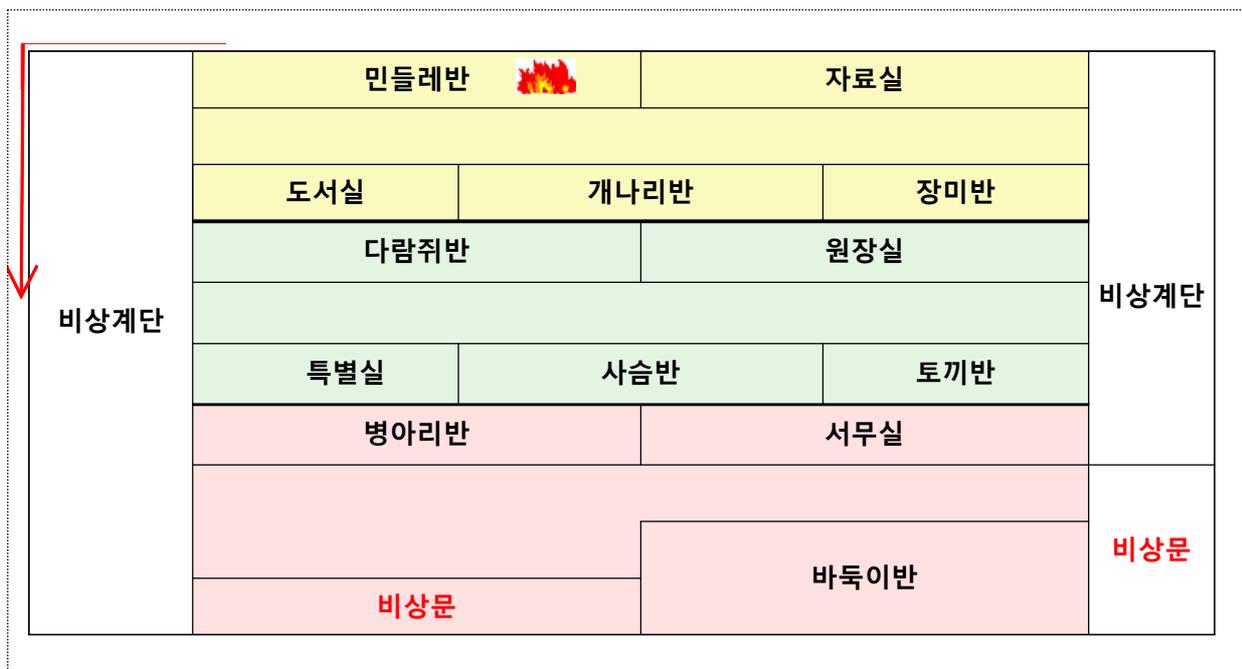
일반 현황

학교명	제일무궁화유치원	설립	사립
주소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6길 3		
전화	02) 402-9436	홈페이지	www.jeilkids.com
학교안전책임관(교장)	박 영 옥		

학생 및 교직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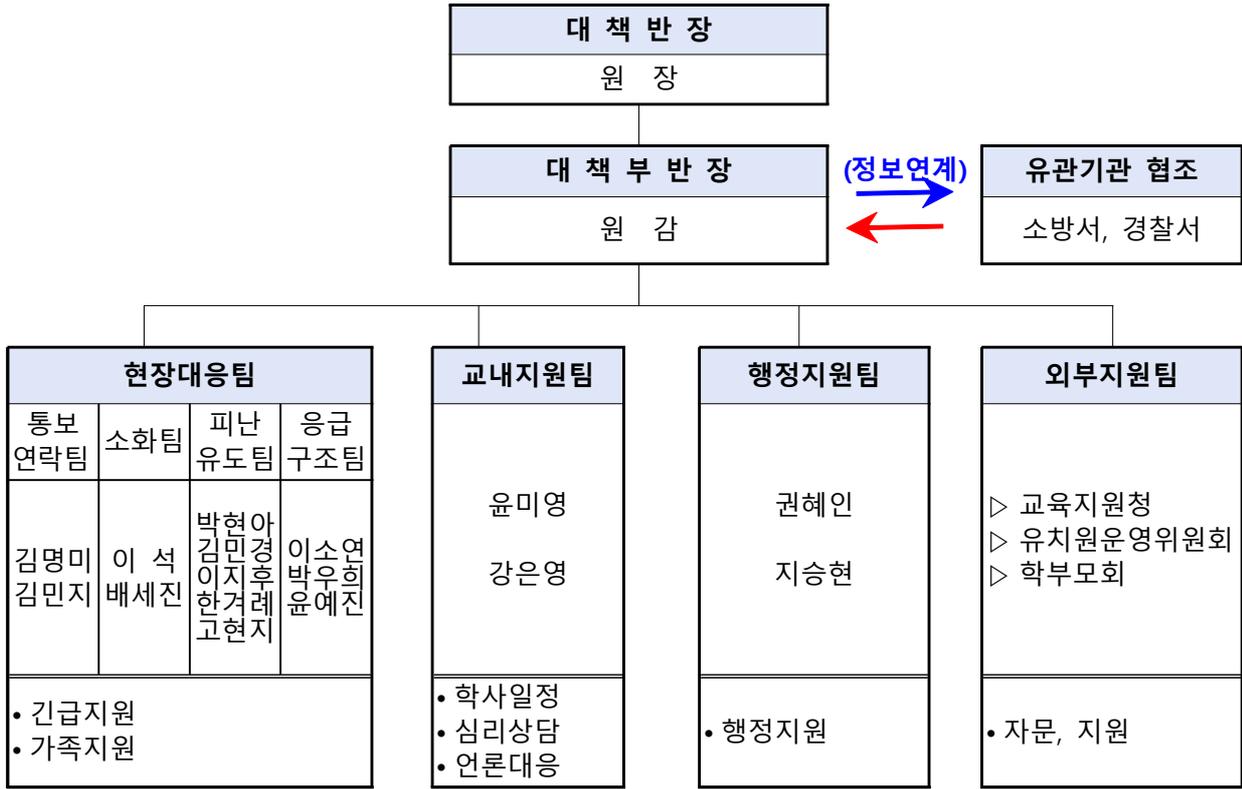
학생(명)	만3세	만4세	만5세	합계
	57	76	74	207
교직원(명)	교원	행정직원	기타	합계
	18	2	3	23

비상대피안내도(예시)



2 학교안전 조직

안전 관련 추진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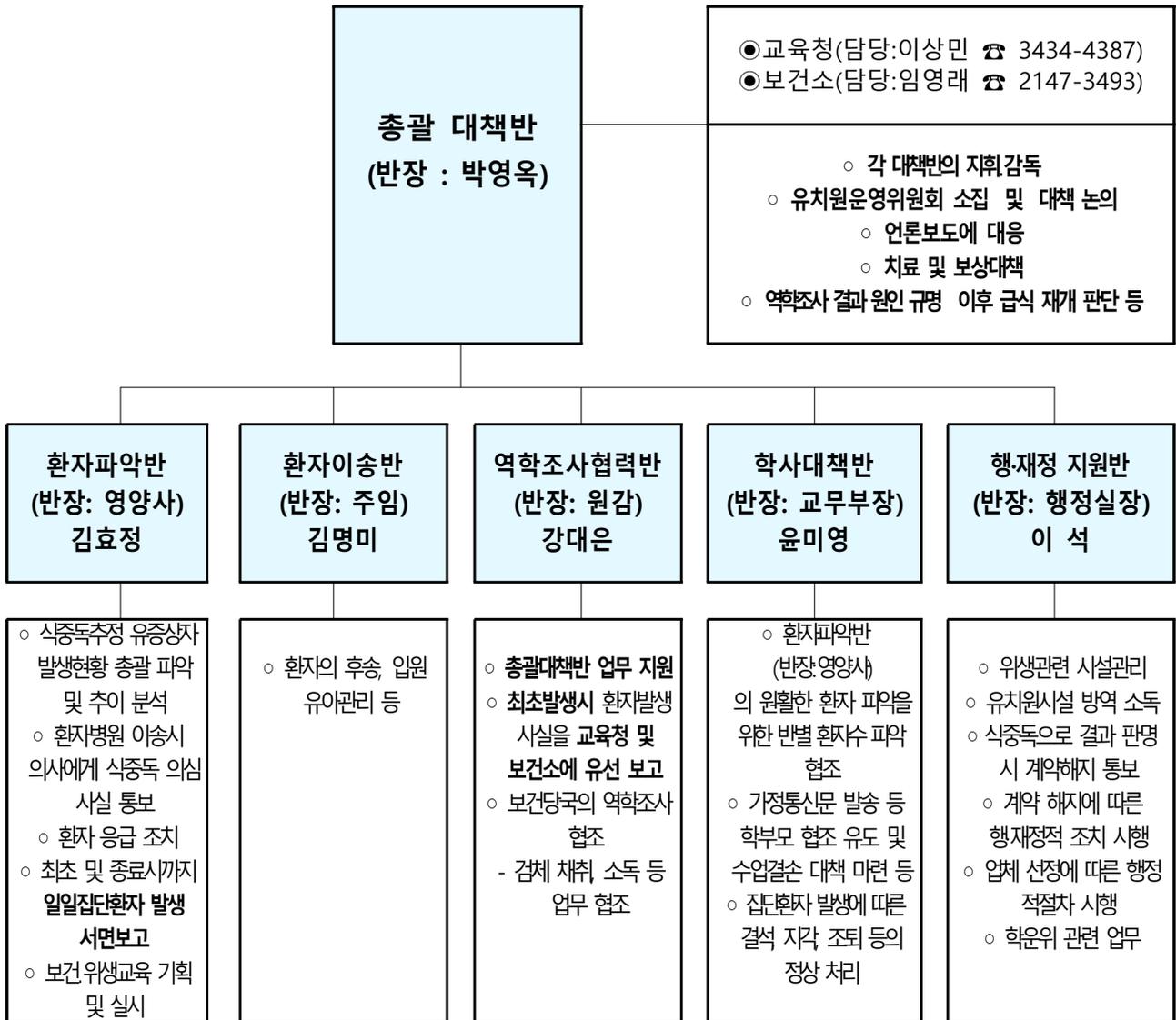
※ 팀별 추진 업무(1차)

팀	임무
통보연락팀	* 119신고, 건물 내 화재발생통보 *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통보연락
소화팀	* 소화기, 옥내소화전을 사용 화재진압
피난유도팀	* 건물 내 유아 대피유도 * 방화문 폐쇄, 가스 위험물 등 제거 * 중요물품 안전한 장소로 이동
응급구조반	* 부상자 응급조치 * 병원 긴급후송

※ 팀별 추진 업무(2차)

현장대응팀	원내지원팀	행정지원팀
- 구호조치 및 병원후송 - 보호자 연락 - 최초 사안 조사 및 정보수집(현장방문) - 일지 작성 - 사안보고서 작성	- 비상연락 (전직원, 학부모) - 직원회의 개최 - 유아현황 파악 - 학사일정 검토 - 관련 문서 작성	- 유아 하원 대책 수립 - 보호자 현장 방문 지원 - 피해현황 파악 -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협조체계 구축
↓	↓	↓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 - 사안 관련 학부모 응대 - 유아 관리 (동요 및 추가사고 방지)	- 학부모 지원 요청 - 긴급상황시 SNS발송 - 가정통신문 발송 - 피해학생 및 가족 지원 - 상담계획 수립	- 추가 사고위험 여부 확인 - 행.재정 지원대책 마련

🔍 학교식중독 교내대책반의 구성·운영



🔍 유관기관 협조 체계

- 안전교육, 안전점검, 비상훈련, 사고구조, 사고복구 등 일련의 학교안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유기적 협조체계를 사전에 구축

구분	대상	연락처
소방서	송파 소방서	431-5119
경찰서	송파 경찰서	(국번없이)182
	가락 지구대	443-0112
병원	경찰병원	3400-1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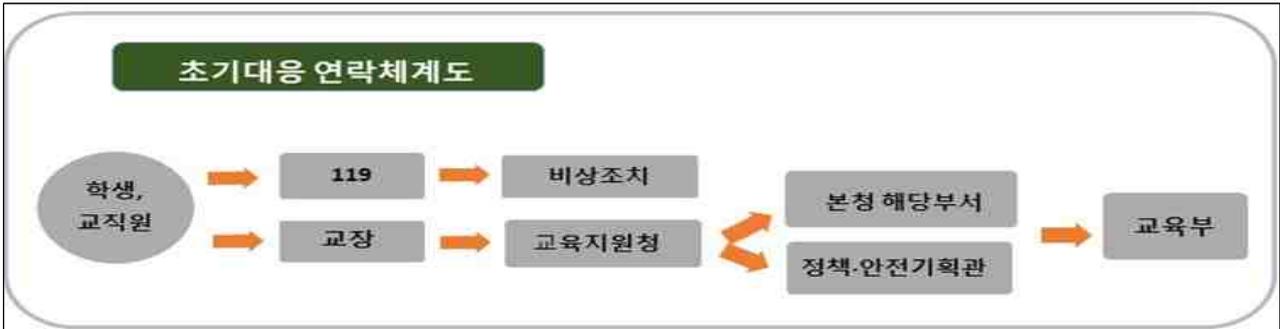
🔍 학교안전계획(공개용) 학교 홈페이지 게시 여부

게시	미게시
○	

3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 학교 안전사고 보고 체계

○ 재난 대응 체계



구분	역할
교직원	- 119 신고 및 학교장에게 연락
원장	- 교육지원청 및 본청에 연락
교육지원청 및 본청 사업부서	- 정책·안전기획관에 재난상황 보고 - 피해 복구를 위한 실무 수행방안 강구 및 실행 - 피해상황에 대한 사후관리 등 재난상황 대응 - 재난 위기경보 수준 경계 단계시 상황관리전담반 구성·운영
정책·안전기획관	- 재난상황 전파 및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 - 재난현황 실시간 관리 - 규모별 상황관리전담반 구성 지시(교육지원청 및 본청 사업부서) - 재난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시 지역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 재난 및 안전사고 신속 보고체계 가동

- 학교(기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24시간 일관성 있는 보고체계 유지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최초보고 시 학교에서는 관할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에 보고
- 교육지원청은 교육청 상황보고에 함께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도 재난상황 통보
- *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 (보고 대상)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교육활동 중 발생) 병원 치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발생)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학교 관련 시설의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학교 현장의 폭발사고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학교 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관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5조의2
-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교육부, 2021)
-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교육부, 2022)



1 전년도 학교계획 추진실적

🔍 전년도 학교계획 추진현황

구분	영역	세부점검내용	전년도 추진실적			계획수립	
			○	△	×	○	×
1.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기본계획, 지역계획, 학교계획	학교계획 수립 시 안전담당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였는가?	✓			✓	
		학교계획에서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교직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			✓	
		학교안전계획의 취지와 목표를 학교실정에 맞게 적절히 설정하였는가?	✓			✓	
		우리 학교는 학교와 주변지역의 위험성을 파악한 후, 이에 적합한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학교안전계획은 교직원들 간에 명확히 공유되었는가?	✓			✓	
		안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시간, 정보, 인원, 예산 등)과 수행 절차는 파악되었는가?	✓			✓	
2. 교육활동 운영의 기본지침	학사일정별 학교안전	학사일정별 연간 안전관리계획은 각 계절별 재난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			✓	
		체험과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계획하였는가?	✓			✓	
		안전학습 관련 콘텐츠는 적절하고 풍부하게 준비하였는가?	✓			✓	
		시기, 활동, 행사별로 발생하기 쉬운 사고나 취약 학생 혹은 구역을 파악하여 예방조치를 할 계획을 세웠는가?	✓			✓	
	외부체험 활동 안전	현장체험학습 계획 시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의 사항을 교사들에게 공지하고, 계획에 게재하였는가?	✓			✓	
		학교주변 안전관리	학교안전의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자체, 소방서, 경찰서 등) 간 협력 계획이 마련되었는가?	✓			✓
	스쿨존 정비 방법은 마련되었는가?		✓			✓	
	안전약자 안전대책	요양호자(안전약자)를 파악하고, 안전약자 안전대책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			✓	
3. 학교 안전교육	예방 및 학교안전교육	안전교육 연간계획표에서 학교와 학교 주변에 존재하는 위험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교육계획에 포함시켰는가?	✓			✓	
		안전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배려도 교육에 포함 시켰는가?	✓			✓	

구분	영역	세부점검내용	전년도 추진실적			계획수립	
			○	△	×	○	×
		학생 참여형 안전교육을 준비했는가?	✓			✓	
		안전교육 교사연수 연간계획은 준비 되었는가?	✓			✓	
		안전사고 유형별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교과 연계 방법이 수립되었는가?	✓			✓	
		안전 전문가 초빙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	
	정기훈련	학교구성원 모두 체험할 수 있는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훈련은 구체적 목표 및 평가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			✓	
		훈련은 체험형·토의형으로 수립하였는가?	✓			✓	
		학교에서 일어날 위험이 높은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재난대비훈련을 계획했는가?	✓			✓	
		심폐소생술의 이론과 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	
		안전약자를 포함한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4. 학교시설 안전 점검·관리 및 안전조치	매월 안전점검의 날(제6조)	매월 안전점검의 날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안전관리 (제7조) 실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계획·실시 하였는가?	✓			✓	
CCTV 관리		CCTV 관리 업무 분장은 명확한가?	✓			✓	
5. 학교 안전문화 확산		안전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기록하고 자료를 기록해서 공유하며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각종 안전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공유·적용 하고, 자주 사용하는 자료는 정기적으로 갱신, 정비 하여 손쉽게 찾아 쓸 수 있게 준비하였는가?	✓			✓	
		학교 구성원의 안전 관련 행동, 실천, 태도 등에 대해 인정과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학교 풍토가 조성되어 있는가?	✓			✓	
		학교안전은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확보될 수 있다는 가치관 확산을 위한 홍보·협업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안전관리활동에 따른 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방안을 마련했는가?	✓			✓	
		학교구성원이 학교안전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했을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			✓	
6. 기타 사항		재난과 학교안전사고의 보고와 보상에 관한 절차와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마련해 놓았는가?	✓			✓	

📄 전년도 학교안전교육 추진실적

○ 교직원 안전교육 직무연수 이수 현황(2021~2023년)

연도	구분	교직원 수(명)			안전관련 전문교육(15시간) 이수			
		교원	직원	계 (A)	교원	직원	계 (B)	이수율 (B / A)×100
2021.3.~ 2024.2		18	2	20	18	2	20	100

※ 3년마다 모든 교직원이 안전교육 직무연수(15시간 이상) 이수
 ※ 교원, 직원 및 계약제교직원 포함, 교육활동참여자 제외

관련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8조 및 시행령 제2조, 고시 제4조

1. 학생 및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2023년)

교육대상 인원수(명)				교육실시 인원 수(명)				실사비율(%)	
학생 (A)	교직원 수			학생 (C)	교직원 수			학생 (C/A)	교직원 (D/B)
	교원	직원	소계 (B)		교원	직원	소계 (D)		
198	18	2	20	198	18	2	20	100	100

관련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

○ 안전·교육과정 영역별 학생 안전교육 이수시간 현황(2023년)

교육과정 영역별 이수시간 안전영역(필수이수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생활안전(10)	13
교통안전(10)	13
폭력 및 신변보호(10)	9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10)	10
재난안전(6)	7
직업안전(3)	3
응급처치(2)	2
계(51)	57

관련

• 학교안전법 제8조 및 시행령 제2조, 고시 제3조

○ 2023학년도 재난대비훈련 실적(실시 횟수)

구분	재난대비훈련 유형						
	화재		지진	방사능재난	화학물질 유출사고	기타재난	
	자체	합동				횟수	비고 (유형)
훈련 실시 횟수(회)	10	2	2	1	1	8	폭염, 풍수해 등

○ 2023학년도 학생안전체험교육비 예산 실적(24. 2월말 기준)

- 체험 중심 학교안전교육 확대를 통한 안전교육 내실화 목적
 - * 학생안전체험교육비 예산 중 학생안전체험교육 관련 사용 비율 증대
- 2023학년도 학생안전체험교육비는 통합교부사업비로 학교기본운영비에 통합하여 교부되었음
 - * 관련: 2022 학생안전체험교육비 제출 요청(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활성화 집행실적 포함)
(정책·안전기획관-13865, 2022. 12. 7.)

편성	미편성
○	

* 학생안전체험교육비 예산 편성 후 추경으로 삭감시 집행액이 있으면 편성, 집행액이 없으면 미편성으로 간주

교부액 (A)	학생안전체험교육 관련 집행액 (B)	기자재 구입 관련 집행액 (C)	불용액 (D)	학생안전체험교육 관련 사용 비율 (%) (E=B/A)
1,500,000	1,500,000	0	0	100

* A=B+C+D

예시

- 학생안전체험교육비: 안전체험관 이용 등 안전체험(VR 포함)교육비, 체험관 버스비/간식비, 체험강사비, 교재비 등 학생안전체험 관련 직·간접 운영비
- 기자재 구입: CPR마네킹, 화재대비재난마스크, 물소화기 등 물품 구입비

2 학교안전 현황분석 및 개선방향

🔍 학교안전사고 현황(2023년)

○ 활동시간별

활동시간별							합계
체육수업	점심시간	수업시간	휴식	학교행사	특별활동	등하교	
.	1	1	2

○ 활동장소별

장소별					합계
운동장	부속시설	교실	통로	교외활동	
.	.	2	.	.	2

○ 사고 형태별

형태별						합계
사람과의 충돌	물리적힘 노출	낙상-넘어짐	낙상-미끄러짐	낙상-떨어짐	기타	
1	.	1	.	.	.	2

○ 사고 행동별

행동별								합계
공부	실험/실습	운동	식사/휴식	보행/주행	장난/놀이	승하차	기타	
.	.	.	.	2	.	.	.	2

○ 학교안전사고 분석 결과

- 이동시 서두르지 않기
- 이동시 주의 살피기

🔍 조치 계획

○ 학교 자체 계획

- 바르게 걷기교육
- 천천히 걷기교육
- 살피며 걷기교육

관련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schoolsafe.or.kr) - 통계 - 학교안전사고통계 탭



1 안전한 학교 특색사업

현황 및 문제점

- 무궁화 안전교육 프로젝트 실시
- 유치원 내.외부인 관리 철저
- 유치원 주변 차량통행 및 불법주차 차량의 관내 협조요청
- 원내 이동시간 및 점심시간의 안전사고 대비교육 철저
- 화장실 및 복도 장소에 따른 안전교육과 더불어 세면대 바른 사용으로 미끄럼사고 방지

주요 내용

- 생활속 안전예방교육
 - 월요일 등원 후 5분안전교육 실시
 - 실외놀이 및 신체활동 전 5분안전교육 실시
- 안전교육 7대표준안에 따른 체계적 교육
 - 연간 56시간 안전습관형성 교육
- 재난대피훈련
 - 월 1회 실시
-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찾아오는 안전교육 실시
 - 지역사회와 협조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안전교육 실시(예: 뮤지컬 안전 동화)

 학사일정별 안전관리 연간계획

지도시기		학교안전교육 7대영역		안전지도내용	차시 계획
월	주	영역	중분류		
3	1	교통안전	자동차 안전/ 보행자 안전	어린이 통학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해요/ 안전지킴이 기룡이와 함께하는 성육이의 하루	12-1차 12-2차
	2	교통안전	보행자 안전	'차를 보고 건너요'노래를 불러요.	12-3차
	3	교통안전	보행자 안전	전 좌적 안전 띠 캠페인	12-4차
	4	교통안전	보행자 안전	경찰서 교통경찰 교통안전교육	12-5차
4	1	폭력예방 및 신변안전 재난대비안전	학교 폭력/ 자연재난	소중한 우리 몸/ 황사 미세먼지 대응+교육	9-1차 7-1차
	2	교통안전	대중교통 안전	차 안에서 지켜야 할 약속	12-6차
	3	약물-사이버 중독예방	약물 중독	엄마 아빠 술은 안돼요.	11-1차
	4	생활안전	시설 및 제품 이용 안전	피노키오와 함께하는 안전한 미술시간	13-1차
5	1	재난대비안전	화재	생명의 문! 비상구	7-2차
	2	폭력예방 및 신변안전	자살	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9-2차
	3	약물-사이버 중독예방 / 생활안전	사이버 중독/ 시설 및 제품 이용안전	갤럭시 안전/ 식품 안전	11-2차 13-2차
	4	직업안전교육 / 미세먼지교육	직업안전의식 / 미세먼지 교육	(직업안전)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 미세먼지 예방법!	3-1차 3-2차
	5	약물-사이버 중독예방	사이버 중독	친구들과 놀이해요.	11-3차
6	1	약물-사이버 중독예방 / 폭력예방 및 신변안전	사이버 중독/ 학교 폭력	내 눈이 아파요./ 나를 아프게 하지 마세요	11-4차 9-3차
	2	교통안전	보행자 안전	빨간모자야, 조심해!	12-7차
	3	생활안전	시설 및 제품 이용안전	멈추기 생각하기 도와주세요	13-3차
	4	생활안전	시설 및 제품 이용안전	계단에서는 조심조심 / 몸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13-4차 13-5차
7	1	응급처지교육	응급처치의 이해와 필요성	도와주세요! 119아저씨	2-1차
	2	교통안전	보행자 안전	뽕뽕! 교통안전 신호	12-8차
	3	재난대비안전	자연재난	번개가 쳐요	7-3차
	4	약물-사이버 중독예방	약물 중독 / 사이버 과의존	아빠 담배는 안돼요. / 좋아요, 나빠요(중독예방)	11-5차 11-6차
8	2	교통안전/ 생활안전	보행자 안전/ 물놀이 안전	비 오는 날의 안전 / 물놀이 안전 교육	12-9차 13-6차
	3	약물-사이버 중독예방	사이버 중독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	11-7차
	4	교통안전 / 폭력예방 및 신변안전	자전거 안전 / 성폭력	바퀴달린 것을 탈 때에는 조심조심/ 친구를 울렸어요.	12-10차 9-4차

지도시기		학교안전교육 7대영역		안전지도내용	차시 계획
월	주	영역	중분류		
9	1	생활안전	유괴 및 미아 사고방지	문을 열면 안돼요.	13-7차
	2	생활안전 / 미세먼지 교육	신체활동안전/ 미세먼지 교육	현장체험을 안전하게 다녀와요./ 미세먼지 기후변화 교육	13-8차 3-3차
	4	폭력예방 및 신변안전	학교폭력	(언어폭력) 지켜요, 작은 기본	9-5차
10	1	교통안전	대중교통이용 안전수칙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해요	12-11차
	2	폭력예방 및 신변안전	학교 폭력	싫어요, 안돼요, 도와주세요	9-6차
	3	교통안전 / 재난대비안전	자동차 안전/ 자연재난	나를 지켜주는 보호장구/ 미세먼지 바로 알기 캠페인	12-12차 7-4차
	4	생활안전	시설 및 제품 이용안전	위험! 끼임사고	13-9차
11	1	직업안전교육	산업재해의 이해와 예방	아빠 엄마! 산업재해가 뭐예요?	3-2차
	2	생활안전	시설 및 제품 이용안전	전기 감전을 조심해요.	13-10차
	3	약물-사이버 중독예방	사이버 중독	위험! 인터넷 게임. / 인터넷의 예절	11-8차 11-9차
	4	응급처치교육	상황별 응급처치	영유아 돌연사 비상대응	2-2차
12	1	생활안전	시설 및 제품 이용안전	조심! 멘홀과 환풍구	13-11차
	2	폭력예방 및 신변안전	학교 폭력	이런 장난은 싫어!	9-7차
	3	생활안전	신체활동 안전	안전한 장소에서 안전하게 놀이해요.	13-12차
1	2	재난대비안전	자연재난	겨울철 화재 조심! / 군중밀집지역 안전교육	7-5차
	3	폭력예방 및 신변안전 / 재난대비안전	성매매 예방/ 자연재난	내몸은 소중해요/ 빨리 피해요.	9-8차 7-6차
	4	직업안전교육 / 재난대비안전	직업 안전 의식/ 자연재난	안전한 유치원을 함께 만들어요./ 한파 및 대설	3-3차 7-7차
2	1-2	약물-사이버 중독예방	사이버 중독	스마트폰의 예절 / 나는 절제 어린이	11-10차 11-11차
		폭력예방 및 신변안전	학교 폭력	바른말 고운말	9-9차
	3	생활안전	유괴 및 미아사고방지	실종예방교육 총 복습 활동	13-13차
안전자료 사이트		*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 - 학교안전정책, 학교안전교육 7개영역지도서, 동영상 등 * 꿀맛닷컴(WWW.kkulmat.com) - 학교안전교육 7개 영역별 동영상 링크 * 서울특별시교육청홈페이지→교육정보→안전교육 - 학생안전매뉴얼 등 교육부 및 교육청 안전관련 자료 탑재			
재난대피 훈련		* 지진 * 방사능 재난 * 화학물질 유출사고 * 폭염 * 풍수해 * 대설.한파 * 한파 * 테러 * 민방공*해양사고			

📅 재난 대비 훈련 연간계획

월	화재대피훈련	재난대피훈련 및 민방위 대피훈련
3	지진이 났어요(교실에서 대피해요)	지진
4	불이 나면 불이야! 소리쳐 알려요	화학물질 유출사고
5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대피해요	흥기 난동(무단침입)
6	비상구를 찾아 안전한 곳에 모여요	해양사고
7	연기 아래로 엇금 엇금 낮게 대피해요	폭염
8	토끼반에 불이났어요	풍수해
9	불이 붙었을 때에 둥굴뚝굴	민방위대피훈련(북한 포격)
10	1층에서 불이 났어요	방사능 누출 / 군중밀집지역대처
11	지진이 났어요(합동대피훈련)	테러
12	복도에 불이 났어요	대설
1	우리 반에 갇혔어요! (교실 밖에 불이 났을 때)	한파
2	총 복습 활동	민방위대피훈련

※ 학교 재난 대비 훈련 담당자는 유사시에 대비하여「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교육부)을 책자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 (담당자: 지승현 / 매뉴얼 위치: 서무실)

참 고

- 재난안전교육은 재난대비훈련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을 달리하여 매 학년도 2종류 이상을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함(참고의 별표1,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지역 및 학교 특성(과거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훈련유형을 선정하고,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 자료실 등을 참고하여 훈련 계획수립
- 관계기관과의 합동훈련(안전한국훈련, 소방 합동훈련 등) 시에는 가능한 한 학교 구성원(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의 참여 또는 참관 독려

관 련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조, 고시 제4조의2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교육부, 2022)

통학차량 안전관리

- 매일 통학차량 운영 전·후로 차량의 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점검표*등을 작성·보관
* 타이어, 브레이크, 조향장치 등 차량 안전운행과 직접 연관이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매일 점검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기관*은 안전운행기록을 분기별로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제출 (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
 - 통학버스관리시스템(schoolbus.ssif.or.kr) 활용
 - 통학버스 등록 및 분기별 안전운행기록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항에 따른 유치원

안전약자(요보호학생) 지원 계획

- 안전약자 파악
- 안전약자에 대한 배려교육
- 유치원 재난대비훈련 시 안전약자를 배려한 계획 및 진행

참 고

- 안전약자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일반 학생들과 달리 세심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의미하며, 지원 계획을 작성
- 신학기 건강조사 등을 통해 건강문제를 가진 학생을 파악하고 개별면담과 정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해 안전한 학교생활을 돕고, 응급상황 예방과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 필요

다중밀집 행사 실시에 따른 인파사고 예방계획

- 다중밀집 행사* 시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 교육행사 진행 시 학생·교직원, 사람들 간 대형간격 유지하는 등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철저
 - * 학교 축제, 체육대회, 입학 및 졸업식, 현장학습, 졸업여행, 교외 행사장 방문, 집회 등
- 사고 발생 시 119신고 및 응급조치 등 상황에 맞는 응급조치 실시

참 고

-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교육 예시

- 학교 축제, 체육대회, 입학 및 졸업식, 현장학습, 졸업여행, 교외 행사장 방문 등에서 학생·교직원, 사람들 간 대형 간격을 유지하기
- 사람이 많이 밀집된 곳에서는 앞 사람과의 간격 유지하며 걷기
- 움직일 수 없거나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 장소 벗어나기
- 스마트폰을 보거나 주의산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전방 주시하며 걷기
-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주변 사람에게 큰소리로 상황 알리기
- 팔짱을 끼거나 가방, 옷 등으로 흉부 보호하기
- 넘어졌을 때 위험성 줄이기 위해 몸을 작은 자세로 웅크려 보호하기
- 운동화처럼 편하고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신발 신기

📄 현장체험 실시 전 안전교육 실시 계획

추진 단계	추진 내용
1단계 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협의회 실시 ○ 1일형 체험학습 학교 기본계획 수립 (필수 포함요소 : 체험학습 학생안전 대책, 체험학습 안전교육 실시, 그 밖에 학교장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계약을 위한 행정실과의 협의
2단계 시기 및 장소 안내장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가정통신문 발송(주제 및 장소 등 안내)
3단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실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심의(자문) (일정 및 장소, 추정금액 적정성 여부, 안전 계획 등) - 계약 방법에 따른 심의(자문)
4단계 입찰 공고 및 제안서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행정실) ○ 필요시 제안서 평가
5단계 현장답사 (필요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답사 실시 - 단, 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교장이 안전대책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경기형 체험학습프로그램 인증제'를 이용할 경우 현장답사 생략 가능 ○ 현장답사 결과 보고(학교장)
6단계 사전 업무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점검표 포함 세부 실천 계획 수립(학교장 결재) ○ 2차 가정통신문 발송 (최종 참가 인원 확정) ○ 체험학습 징수 요구서 내부결재(필요 시 세부계획으로 대치 가능) ○ 체험학습 예산 집행 에듀파인 품의 ○ 위생 점검 및 운전기사 음주 감지를 위한 음주감지기 등 준비 ○ 인솔자 적정 확보 ○ 교사 외 인솔자에 대한 명예교사 위촉 ○ 교과 수업과 연계한 체험학습 관련 교육활동 ○ 미참가자 교육계획 수립 ○ 체험학습 활동 자료 준비 ○ 비상연락체계 점검 ○ 체험학습 일정 예약 점검하기 ○ 인솔자 복무 처리 등

추진 단계		추진 내용
7단계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 적용 권장 ○ 조달청 다수공급자 제도(MAS) 활용 권장 ○ 여행자 보험가입 계약(운영위원회 가입 결정시)
8단계	안전연수 및 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와 인솔자 사전 안전 연수 실시 ○ 체험학습 참여 학생 사전 안전 교육 실시 ○ 사전 안전교육 상황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현장체험학습정보방' 공개(의무사항)
9단계	체험학습 현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차량 이용 당일 점검 ○ 비상연락체계 유지 ○ 체험학습 진행 시 안전 점검 및 안전 교육 실시 ○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보고 ○ 인솔자 상시 임장지도 및 대규모 운영 시 안전요원 배치 권장
10단계	경비 집행 및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임시경비정산서 제출: 집행후 5일 이내 정산) ○ 수익자 부담 경비 집행 내역 공개 ○ 청구 받은 날 5일 이내 경비 지급 ○ 경비는 계약상대자(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11단계	결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형 체험학습과 관련된 사후 교육활동 권장 ○ 결과 활용(학생생활기록부, 에듀팟 기록)

 등하곶길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 계획

지도시기			학교안전교육 7대영역		안전지도내용	차시 계획
월	주	일시	영역	중분류		
03	1	3월 2일 3월 3일	교통 안전	자동차 안전/ 보행자 안전	어린이 통학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해요/ 안전지킴이 기룡이와 함께하는 성욱이의 하루	12-1차 12-2차
	2	3월 9일		보행자 안전	'차를 보고 건너요'노래를 불러요	12-3차
	3	3월 16일		보행자 안전	전 좌적 안전 띠 캠페인	12-4차
	4	3월 23일		보행자 안전	경찰서 교통경찰 교통안전교육	12-5차
04	2	4월 18일		대중교통 안전	차 안에서 지켜야 할 약속	12-6차
06	2	6월 13일		보행자 안전	빨간모자야, 조심해!	12-7차
07	2	7월 11일		보행자 안전	빵빵! 교통안전 신호	12-8차
08	2	8월 14일		보행자 안전	비오는 날의 안전	12-9차
	4	8월 29일		자전거 안전	바퀴달린 것을 탈 때에는 조심조심	12-10차
10	1	10월 2일		대중교통이용 안전수칙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해요	12-11차
	3	10월17일		자동차 안전	나를 지켜주는 보호장구	12-12차

- 유치원 교직원의 유치원 주변 등·하원 길 안전지도 강화
- 스쿨존 안전시설의 개선과 설치를 위해서 지자체, 경찰청에 적극 협조 요청
(노후 횡단 보도, 과속방지턱,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

구 분	내 용
통학 안전 지도 교육 내용 및 교육 횟수	통학버스 안전교육-승하차, 안전띠(실습)
통학 안전 지도 방법 및 담당자 현황	안전연간 교육계획 안에 교통안전 내용을 포함 통학버스 운전기사, 안전도우미교사- 안전 수칙 철저 숙지 차량 탑승 시 유아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차량 운행 후 차량안전운행일지 작성
등하원 지도 방법 및 내용	유아 교통안전 캠페인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 등·하원 시 교통안전 예방활동을 강화
통학버스 및 차량 출입 관리 현황 및 방침	유치원 출입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설정 완료 차량 속도위반 단속, 방법기능, 주.정차 단속

3 교직원 안전교육 시행계획

🔍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2024년)

구분	총 교직원 수(명)			안전관련 전문교육(15시간) 이수 대상 예정자			
	교원	직원	계 (A)	교원	직원	계 (B)	이수율 (B/A)×100
인원	18	2	20	18	2	20	100

※ 2024년은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3주기(2021년3월~2024년2월)로 해당됨.

관련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8조 및 시행령 제2조, 고시 제4조

🔍 학생 및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2024년)

교육대상 인원수(명)				교육실시 인원 수(명)				실시비율(%)	
학생 (A)	교직원 수			학생 (C)	교직원 수			학생 (C/A)	교직원 (D/B)
	교원	직원	소계 (B)		교원	직원	소계 (D)		
207	18	2	20	207	18	2	20	100	100

관련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

🔍 교육활동 참여자 안전교육 학교 자체계획 수립 여부(2024년)

수립	미수립
○	

관련

- 교육활동참여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의거한 자로서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녹색어머니회** 등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자를 말함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하교시 교통지도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을 교육활동참여자로 정하고 있음
- 학교 자체계획(1회 / 1시간 이상 실시) 수립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 법령 의무 안전연수 시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1 학교안전공제회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절차

	구 분	업 무 처 리
학 생	사고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안전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피공제자에게 발생하는 급식,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 섭취·접촉에 의한 질병 등
학 교	사고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ww.schoolsafe.or.kr -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 내부결재 후 통보버튼 눌러 공제회 전송
시·도 공제회	공제회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통지서 접수
학 생	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치료
학 교 또는 학부모	공제급여 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접속(PC 및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ww.schoolsafe.or.kr - (학 교)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 (학부모)휴대폰 인증 후 로그인 · 사고통지서 조회 후 청구서 입력 · 해당지역 공제회 및 시스템에 첨부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서류 : 청구서, 통장사본, 진료비계산서, 50만원 이상시 진단서·등본 추가
시·도 공제회	공제회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결정
시·도 공제회	지급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내역 통보
학부모	심사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회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시·도 공제회의 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구 분	업 무 처 리
피공제자 및 제3자	사고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배상책임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활동 또는 학교시설물 관리업무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 및 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차량파손 피해 - 어린이놀이시설 하자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 학교급식 관리·운영과 관련하여「식품위생법」제101조에 따라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 학교승강기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 학교 관리 하의 학생 휴대품 분실·파손 피해
학 교	사고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 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sifins.or.kr:8001/ -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 사고등록 후 통보버튼 눌러 공제중앙회 전송
공제 중앙회	사고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통지서 접수
피공제자 및 제3자	치료·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치료 및 파손물품 수리 진행
학 교 또는 피해자	공제급여 청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 접속(PC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sifins.or.kr:8001/ -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 사고통지서 조회 후 공제급여청구서 입력 ·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에 증빙서류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 영수증, 수리내역서, 수리완료사진, 통장사본 등
공제 중앙회	청구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결정
	지급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내역 공문 통보
피해자	심사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중앙회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3 학교안전사고 시 학생 심리지원

송파 Wee센터

- 역할: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연계망을 활용하여 심리평가-상담-치유를 위한 one-stop 서비스 제공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2(방이동)
- 대표전화: 02) 3431-7887

○ 대상

- 관내 위(Wee) 클래스가 없는 학교 학생
- 위(Wee) 클래스에서 상담 받기 어려운 학생
- 위(Wee) 클래스에서 연계한 학생

○ 신청

- 직접 방문 신청
- 전화로 사전 접수 후 방문
- 소속 학교를 통해 공문으로 신청

○ 이용시간

평일 09:00~18:00, 토요일(업무를 하는 위(Wee) 센터도 있음), 일요일·공휴일 휴무

○ 지원내용

- 개인상담
- 집단상담
- 전화상담
- 온라인상담
- 순회상담
- 심리검사
- 특색사업 및 행사
- 자문
- 연계
- 교육
- 홍보

○ 상담절차



참고1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단위: 단위활동, 차시)

구분		생활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 교육	직업안전 교육	응급처치 교육
교육 시간	유치원	13	10	8	10	6	2	2
	초등학교	12	11	8	10	6	2	2
	중학교	10	10	10	10	6	3	2
	고등학교	10	10	10	10	6	3	2
횟수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3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 참고: 1.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외 한국학교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경우는 인정되는 학력에 해당하는 학교급에 맞추어 실시한다.
2. 학교안전교육 실시 시간의 단위는 유치원은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단위활동이며, 초·중등학교는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차시이다.
3. 학교급별 제시하는 안전교육 시간은 학년별(유치원은 연령별) 실시해야 할 시간을 말하며, 횟수는 영역별 안전교육 시간을 학기당 제시된 횟수 이상으로 분산·실시해야 함을 말한다.
4. 학교(유치원 포함) 운영 성격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총 이수시간의 범위 내에서 안전영역별 이수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운영(20% 범위 내, 소수점은 올림처리)할 수 있다.
5. 재난안전교육은 재난 대비 훈련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을 달리하여 매 학년도 2종류 이상을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6. 1단위활동 및 1시간(차시)의 수업 시간은 교육과정을 따르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별표2】

학생 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

구분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유치원	1. 교실, 가정, 등하곳길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1. 표지판 및 신호등의 의미 등 교통안전 규칙 알고 지키기	1. 내몸의 소중함과 정확한 명칭 알기	1. 올바른 약물 사용법 알기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알기	1. 일터 안전의 중요성 및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일 알기	1. 응급상황 알기 및 도움 요청하기
	2. 안전한 장소를 알고 안전하게 놀이하기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알기	2.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알기	2. 생활주변의 해로운 약물·화학제품 만지기나 먹지 않기	2. 화재 발생 시 유의사항 및 대처법 알기	2. 일터 안전시설 현장 체험하기	2. 119신고와 주변에 알리기
	3. 놀이기구나 놀잇감, 도구의 바른 사용법을 알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3. 어른과 손잡고 걷기	3.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알기	3. T.V, 인터넷, 통신기기(스마트폰 등) 등의 중독 위해성을 알고 바르게 사용하기	3. 각종 자연 재난 및 사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 알기	3. 손씻기와 소독하기 등 청결유지 하기	3. 손씻기와 소독하기 등 청결유지 하기
	4. 실중, 유괴, 미아 상황 알고 도움 요청하기	4. 교통수단(자전거, 통학버스 등) 안전하게 이용하기	4. 나와 내 주변사람(가족, 친구 등)의 소중함을 알고 사이좋게 지내기	4. 나와 내 주변사람(가족, 친구 등)의 소중함을 알고 사이좋게 지내기	4.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 실시	4.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알기	4.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알기
	5. 몸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알기		5. 아동학대 신고 및 대처방법 알기				
초등학교	1. 안전하게 교실, 가정, 공공시설 이용하기	1. 안전한 통학로 알기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법 알기	1.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및 올바른 약물 복용법 알기	1. 화재의 원인 및 대피요령, 신고, 전파요령 알기	1. 일터에서 발생하는 산업 재해를 알기	1. 응급처치의 상황, 의미, 중요성, 신고·조치 방법 알기
	2. 학용품·놀이용품의 안전한 사용 및 식품 안전 알기	2. 교통수단(자전거, 대중교통 등)의 안전한 이용법 알기	2. 학교폭력의 종류를 알고, 종류별 예방법 알기	2. 중독성물질을 알고 안전한 활용 방법	2. 화상 대처 요령 알기	2. 일터 안전시설 현장 체험하기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 알기
	3. 실험·실습 시 안전에 유의하기	3. 교통 표지판 등 도로 교통 법규 알기	3.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알기	3. 건전한 사이버 통제 능력 배양 및 사용습관 형성하기	3. 각종 자연 재난과 안전한 행동 알기	3. 상치의 종류와 응급처치 하기	3. 상치의 종류와 응급처치 하기
	4. 안전한 놀이활동 및 야외 활동		4. 내 몸의 소중함을 알기		4. 폭발 및 붕괴, 테러 위협 유형별 대처 요령 알기	4. 일생생활 속 응급처치 알기	4. 일생생활 속 응급처치 알기
	5. 유괴예방, 미아사고 예방과 대처		5. 아동학대의 유형 및 대처방안 알기		5.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 실시		
중학교	1. 공공시설 이용 시 안전과 에티켓 알기	1. 이륜차의 안전한 이용과 점검방법 알기	1. 학교폭력의 유형과 현황 및 위험성 인식하기	1. 항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1. 화재의 원인 및 대피·대응요령, 신고, 전파요령 알기	1. 직업 안전 문화의 필요성	1.응급처치의 상황, 의미, 중요성, 신고·조치 방법 알기
	2. 식품의 종류에 따른 안전한 보관 방법 알기	2.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예방방법 알기	2. 학교 폭력 유형별 신고·대처방법 알기	2.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2. 화상 대처 요령 알기	2. 산업 재해의 의미·유형과 사례별 발생 현황 이해하기	2.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 알기
	3. 실험·실습 및	3. 대중교통 이용	3. 자살예방 및	3. 인터넷 게임 사용	3. 각종 자연 재난과	3. 안전장비의	3. 상치의 종류와

구분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p>체육·여가활동의 안전규칙을 이해하고 바른 사용법 알기</p> <p>4. 실종, 유괴, 미아 상황 알고 예방하기</p>	안전수칙 알기	<p>스트레스 점검과 해소 방법 알기</p> <p>4. 가족과 올바른 의사소통방법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알기 (아동학대 포함)</p> <p>5. 성폭력 대처예방 및 대처법 알기</p> <p>6. 성매매의 위험성 인식하기</p> <p>7.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p>	<p>규칙 만들기 및 실천</p> <p>4. 스마트폰의 건전한 사용 방법</p>	<p>안전한 행동 알기</p> <p>4. 폭발 및 붕괴, 테러 위협 유형별 대처 요령 알기</p> <p>5.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 실시</p>	올바른 사용방법 알기	<p>응급처치 하기</p> <p>4. 일상생활 속 응급처치 알기</p>
고등학교	<p>1. 기호식품의 특성·유해성 및 전기·전자제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 알기</p> <p>2. 실험·실습 안전 수칙 이해 및 보호장구의 바른 사용법 알기</p> <p>3. 체육 및 여가활동의 안전한 활동 상해 시 대처방법 알기</p> <p>4. 실종, 유괴, 미아 상황 알고 예방하기</p>	<p>1. 이륜차의 안전한 이용과 점검방법 알기</p> <p>2.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예방방법 알기</p> <p>3. 대중교통 이용 안전수칙 알기</p>	<p>1. 학교폭력의 유형과 현황 및 위험성 인식하기</p> <p>2. 학교 폭력 유형별 신고·대처방법 알기</p> <p>3. 성폭력 예방과 대처방법 알기</p> <p>4. 성매매의 위험성과 구조 및 신고 방법 알기</p> <p>5. 자신과 타인(가족 포함)의 소중함 인식하기</p> <p>6. 가정폭력 예방 지침을 알고, 보호하기(아동학대 포함)</p> <p>7.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p>	<p>1.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p> <p>2.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p> <p>3. 인터넷 게임 사용 규칙 만들기 및 실천</p> <p>4. 스마트폰의 건전한 사용 방법</p>	<p>1. 화재의 원인 및 대피·대응요령, 신고, 전파요령 알기</p> <p>2. 화상 대처 요령 알기</p> <p>3. 각종 자연 재난과 안전한 행동 알기</p> <p>4. 폭발 및 붕괴, 테러 위협 유형별 대처 요령 알기</p> <p>5.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 실시</p>	<p>1. 직업병의 진단, 예방 및 대처방안 알기</p> <p>2. 작업장의 안전수칙 및 보호장비 알기</p> <p>3. 산업 재해의 의미·유형과 사례별 발생 현황 이해하기</p>	<p>1. 응급처치의 상황, 의미, 중요성, 신고·조치 방법 알기</p> <p>2.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 알기</p> <p>3. 상처의 종류와 응급처치 하기</p> <p>4. 일상생활 속 응급처치 알기</p>
교육 방법	<p>1. 학생 발달 수준을 고려한 전문가 또는 교원 설명</p> <p>2. 학생 참여 수업 방법 연계 적용 (예시 : 역할극, 프로젝트 학습, 플립러닝 등)</p> <p>3. 교내외 체험교육 또는 현장학습</p> <p>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 교육 연계</p>						

□ 개정 취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을 통해 학교 안전공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중증 상해 발생으로 치료 중 간병 필요 시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급 근거 등을 마련

□ 주요 내용

- **(안전공제 대상 확대)** 대학의 안전사고 보험 선택권 확대와 대학생 안전사고 피해보상 강화를 위해 학교안전공제 가입 대상에 대학이 추가되도록 규정
 - ※ (현행) 학교안전법에 따라 유·초·중·고등학교만 안전공제 가입 가능
- **(치료 중 간병료 지급)** 학교안전사고로 중증 상해가 발생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치료 후뿐만 아니라, 치료 중에도 간병료와 부대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
 - ※ (현행) 학교안전법에 따라 치료 완료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 가능
- **(공제급여 지급제한 상향 입법)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급여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규정
 - * [대법원 판결내용] 학교안전법시행령 제19조의2 공제급여의 지급제한 규정 (기왕증, 과실상계)은 법률의 위임 없이 피공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

□ 기대 효과

- 대학생 안전사고 피해보상 확대, 피해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학생·학부모가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두터운 사회안전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 5. (생략)</p> <p><신설></p> <p>6. (생략)</p> <p>② (생략)</p> <p>제36조(요양급여) ①·② (생략)</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7. (생략)</p> <p>8. <u>인공팔다리·틀니, 안경·보청기 등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u></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 ----- -----.</p> <p>1. ~ 5. (현행과 같음)</p> <p><u>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u></p> <p>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6조(요양급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1. ~ 7. (현행과 같음)</p> <p><삭제></p> <p>④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p> <p>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p> <p>2. <u>인공팔다리·틀니, 안경·보청기 등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 비용</u></p> <p>3. <u>요양 중인 피공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간병료</u></p>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3조(공제급여의 제한) ①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② (생략)</p> <p><u><신설></u></p>	<p>⑤ <u>피공제자의 보호자등이 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제4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지급한다.</u></p> <p>⑥ ----- 제5항----- 요양급여 및 부대경비-----.</p> <p>제43조(공제급여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공제회는 제35조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p> <p>③ 공제회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다.</p> <p>④ (현행 제2항과 같음)</p> <p>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급여 지급제한 대상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부 칙 ></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급에 관한 특례) 제36조제4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의 간병에 따른 간병료 및 부대경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p>